

공고 제2026 - 19호

2026. 달성 한국어교육(예비과정) 거점학교(북동중) 창의적체험활동(음악)
강사 모집 공고

2026. 달성 한국어교육(예비과정) 거점학교(북동중) 창의적체험활동 강
사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대구북동중학교장

1. 강사 모집 계획 개요

선발 분야		인원	운영 기간	운영 내용
창의적 체험 활동	음악 영역	1명	2026. 9. 1.(화) ~ 2026. 12. 31.(금) (학기초 적응 기간 및 방학기간 제외)	☐ 창의적체험활동 음악 수업 - 대상: 중·고등학생 10명 이내 1개반 - 방법: 2시간씩 월일 주 1회(총 2시간)

2. 강사 모집 계획 세부 사항

- 모집 인원: 창의적체험활동 정보 1명
- 활동 기간: 2026. 9 1.(화) ~ 2026. 12. 31.(목)
- 지원 자격: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자

- 창의적체험활동 영역별 해당 전공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다문화교육 및 한국어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근면 성실한 자
- 다문화교육 및 한국어교육,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육활동 경력, 관련 연수 이수,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활동 내용 및 방법

- 활동 내용

·대상: 중·고등학생 10명 이내 1개 반

·달성 한국어교육 거점학교(북동중)의 한국어 수업과 연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교육 실시

※ 거점학교 프로그램 교재 등 세부 사항은 차후 별도 안내

- 활동 방법

·음악 영역: 매주 월요일 2시간(3,4교시)

교시	시간
등교	08:30 ~ 08:50
1교시	08:50 ~ 09:30
2교시	09:40 ~ 10:20
3교시	10:30 ~ 11:10
4교시	11:20 ~ 12:00
점심시간	12:00 ~ 13:00
5교시	13:00 ~ 13:40
6교시	13:50 ~ 14:30
하교	14:30~

※학교 일정에 따라 운영 시간 및 요일 변동 가능(사전협의)

○ 강사비(40분 기준)

- 시간당 30,000원(개인별 수업 시간은 주 최대 14시간 이하로 배정 예

정)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 기간: 2026. 8. 19.(수) ~ 2026. 8.21.(금) 14:00까지

- 교부 및 접수

.교부: 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알림마당/채용정보/기간제교사.강사>)

.접수처: 북동중 2층 다문화교육 연구실/ ksm447693@gmail.com

※ 대구광역시 논공로 7길 43 ☎ 053-231-3586, 053-231-3580

※ **인편 접수 및 우편 접수(2026. 8. 21.(금) 14:00까지 도착에 한함) 가능**, 접수 기간이 지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 연휴 기간 내 인편 접수 불가

○ 채용 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 심사

.일자: 2026. 8. 24.(월)

.결과 통보: 2026. 8. 24.(월) 16:20 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차 면접 심사

.일시: 2026. 8. 26.(수) 15:00 ~ (예정)

.장소: 북동중 후관 4층 꿈모도리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8. 27.(목) 16:20(예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포기할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됨

.

※ 학교 사정에 따라 심사 일정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자 제출 서류

- 지원서 1부(<덧붙임 1-1>서식 활용),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1부(<덧붙임 1-2>서식 활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덧붙임 1-3>서식 활용)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덧붙임 1-4>서식 활용)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연수이수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지원자 유의사항

- 1차 서류 심사 결과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 심사를 실시하며, 면접 심사 결과 최종 합격자를 선발,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 심사에서 간단한 수업 실연 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
- 경력증명서는 개인이나 임의 단체에서 발행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지원서 접수 방법 미숙지, 서류 내용의 미비 및 공고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 결격 사유(범죄경력조회 등)가 있거나 제출 서류의 작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 선정된 강사 유고 시 차점자 순으로 강사 선정
- 불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덧붙임 2>서식 활용)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파기

<덧붙임 1-1>

2026년 달성 한국어 거점학교(북동중) 창의적 체험활동 강사 지원서

접수번호	(기입하지 않습니다)					사 진 (3cm× 4cm)
한글성명 (영문)	홍길동 (Hong Gil-dong)	생년 월일		국적 (출신국))	대한민국 (중국)	
현주소						
연 락 전화번호		E-MAIL				
소지자격 및 면허 학 력 및 경 력 현재 재직 및 활동 상황	취득일	자격증 또는 수료증 종류				발행처
	. . .					
	. . .					
	. . .	고등학교 졸업				
	. . .	대학교 대학 과 졸업				
	. . .					
	. . .					
	. . .					
	. . .					
	. . .					
지원 영역		정보	음악	미술	스포츠	
※ 지원 영역을 반드시 1가지 선택 후, 해당 영역에 'o' 표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2026년 달성 한국어 거점학교(북동중)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강사로 지원합니다. 2026. . . 지원자 성명 (서명) 대구북동중학교장 귀하

※

<덧붙임 1-2>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행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자기 소개서

개인별 특성 (성장과정, 성격, 특기사항 등)
※ 작성요령 -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2쪽 이내 작성 - 인쇄 용지 : A4 복사용지, 단면으로 흑백 인쇄(자필작성 불가), 용지방향(좁게) - 글자 모양 : 글꼴(신명조), 기준크기(12포인트)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지원동기 및 교육관
Empty space for content

학생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수업계획 (노하우)
--

--

기타 특이사항

자기소개서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덧붙임 1-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은 **달성 한국어 거점학교(북동중)에서**에서 실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강사 모집에 지원함에 있어 **달성 한국어 거점학교(북동중)에서**에서 아래와 같이 본인
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아래 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대구북동중학교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달성 한국어 거점학교(북동중)에서 실시하는 모집 선정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자격증, 경력 등 강사선정심의에 필요한 제반 정보
- 달성 한국어 거점학교(북동중)에서 강사등재에 필요한 제반정보: 성명, 연락처, 학력, 경력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선정 심의 관련 제반서류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선정 심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8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달성 한국어 교육 거점학교(북동중)	채용방법 서류 및 면접 심사	채용직위(직급) 강사
	채용사유 2026. 달성 한국어 교육 거점학교(북동중)에서 운영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2026. 2. 13.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법률 제18191호, 시행 2022. 5. 19.]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나.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다.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덧붙임 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

지원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